

전주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8424(본소), 2022가단11786(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피고(반소원고) 1. B

소송대리인 C

피 고 2. D

3. E

4. F

5. G

변 론 종 결 2022. 4. 19.(피고 2 내지 5에 대하여) 2022. 12. 20.[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D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4.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E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G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F,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E,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E,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22,410,000원 및 그 중 14,4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F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G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6. 20. 피고 D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2015.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D는 H가 돈을 차용할 때 차용금 중 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해 준 적이 있지만, H가 약속을 어기고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 역시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H가 한 것인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 없는 자신이 원고에게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H를 통하여 피고 D에게 2014.경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 피고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월 2%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나 변제기의 도래에 관한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6. 20. 피고 E에게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15,000,000원을 대여하고 3,5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과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나 변제기의 도래에 관한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F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2. 17. 피고 F에게 이자 월 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한 후 1회분 이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위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F은 모(母)인 I가 계를 타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부탁하기에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일면식도 없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는 2020. 8. 20.자 확인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하며 I에게 딸인 위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은 무효로 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I와 계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딸인 피고 F 명의로 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일면식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이후 원고와 I 사이에 정산을 약정한 2020. 8. 20.자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도 위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직접 받거나 이체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차용증의 기재 역시 2016. 9. 17. 타는 계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그것과 상이한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F에게 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 G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7. 4. 피고 G의 모(母)인 J를 통하여 위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7. 12. 28.을 변제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월 2%로 약정하였다거나 변제기의 도래에 관한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G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자신이 아닌 J가 사용하였고 이후 J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전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G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J라 하더라도 위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면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변제항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피고 B에 대한 본소 대여금 청구 및 반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 1) 원고와 피고 B은 전주 K상가에서 ‘L’라는 여성의류 매장과 ‘M’라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및 상품권 유통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선거래 등을 계속 해 오고 있었다.
- 2) 원고와 피고 B은 상품권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해 오고 있었는데, 서로 각자의 수첩 또는 장부에 기재하며 그 거래내역을 정리하였다.
- 3)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확인서), 갑 제1호증의 3(각서), 갑 제7호증의 1, 2(수첩), 갑 제10호증의 1(차용증)을, 피고 B은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상품권 거래 다이어리), 을가 제4호증(상품권 거래 및 결제내역)을 각 증거로 제출하면서 서로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상대방이 서명 또는 확인의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서명 또는 확인 표시를 한 사실을 부인하며 위조 또는 변조를 항변하는 등 그 성립의 진정을 다투고 있다.
-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2(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2020. 3. 14.부터 2021. 1. 25.까지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고, 위 피고가 제출한 을가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2. 15.부터 2021. 3. 11.까지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어 중첩된 기간 동안의 이체금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피고가 중첩되지 않는 나머지 기간 동안 이체한 금액도 20,000,000원 이상이 된다.
- 5) 원고와 피고 B은 합의에 따라 N 등의 제3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둘 사이의 상품권 대금 결제를 갈음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써 ① 2020. 2.경 대여한 상품권 대금 잔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20. 2. 18.부터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2020. 3. 31. 이후 상품권 대금 미결제액과 O 식품대금 430,000원 등 합계 14,41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행기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하는 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로써 2020. 2. 15.부터 거래한 상품권 대금 결제금액 중 위 피고가 과다 정산하여 지급한 1,590,000원의 부당이득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행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문서 중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특히 상품권 거래 정산의 시점과 종점 또는 중간 정산한 내역을 확정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 결제한 것과 제3자에 대한 대위 정산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이 각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나 위 피고가 본소 및 반소로써 서로 주장하는 상품권 거래 정산대금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서로 다른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대여금 지급 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F,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